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10.10

초 판: 2001년 10월 1일

개정5: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 - 일반 요구사항

Safety & occupational health - General requirements

처 장(Director)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메디슨 애비뉴 380, M11023

뉴욕, NY 10017 USA

이메일: mineaction@un.org

전화: +1 (212) 963 1875

팩스: +1 (212) 963 2498

웹사이트: www.mineactionstandards.org

경 고

본 문서는 표지에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는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 , 또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org>).

저작권 표시

본 유엔문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이며 그 저작권이 유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본 문서 또는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 저장 및 전송할 수 없다(may).

본 문서는 판매할 수 없다.

Director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380 Madison Avenue, M11023

New York, NY 10017

USA

Email: mineaction@un.org

Telephone: +(1212) 963 1875

FAX: + (1212) 963 2498

목 차

목 차	3
머리말	4
해설	5
산업안전보건-일반 요구사항	6
1. 적용범위	6
2. 참고	6
3. 용어, 정의, 및 약어	6
4.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요소	7
4.1. 일반 요구사항	7
4.2. 국가의 책임	7
4.3. 고용인의 책임	8
4.4. 피고용인의 책임	9
부속서 A 인용(표준)	10
부속서 B (참고) OHSAS 18002의 요약	12
개정 기록	14

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재검토된다.

해 설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은 지뢰행동관리의 근본적 원칙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근로 조건과 작업장 안전을 규정하는 최소 표준과 기본 규범을 확립했다. 이 표준들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지뢰행동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전 분야와 고용의 모든 범주에 적용된다. 법적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뢰행동은 모든 레벨의 관리자들에게 도덕적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지뢰행동과 관련하여 ‘안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 사회의 가치들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준’과 같이 ‘허용 가능한’ 정도로 위험이 감소하였다고 가정한 것일 뿐이다. (국제표준화기구 지침 51 참고.)

지뢰행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운영자는 위험감소에 기여하는 작업 관행을 개발하고,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를 갖춘 장비를 선택하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며, 남녀 직원 모두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보호장구 및 보호복을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제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달성해야 한다.

광범위한 운영 환경과 지뢰행동 활동들을 고려할 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서나 조항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뢰행동단체는 산업안전보건(S&OH,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위험을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확인, 평가 및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 절차와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본 표준의 목표는 지뢰행동에 사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조부터 3조에서는 적용 범위, 본 표준에 사용된 인용표준 및 용어를 규정하며, 4조부터 5조에서는 요구사항, 설명서 및 책임을 규정하고, 부속서에서는 본 표준의 적용 방법에 대해 추가 세부정보와 지침을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 일반 요구사항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지뢰행동에 사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과 함께 읽는 것이 좋다(should).

- 1) 국제지뢰행동표준 10.20은 지뢰제거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고
- 2) 국제지뢰행동표준 10.30은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고
- 3) 국제지뢰행동표준 10.40은 지뢰제거 작업을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고
- 4) 국제지뢰행동표준 10.50은 폭발물의 보관, 운반 및 취급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고
- 5) 국제지뢰행동표준 10.60은 지뢰제거사고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 6) 국제지뢰행동표준 10.70은 지뢰행동 작업 중 환경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참고

인용표준 목록은 부속서A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표준들은 본 표준에 인용되고, 본 표준의 일부 조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약어를 정리한 전체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 ‘해야 한다(shall)’, ‘하는 것이 좋다(should)’ 및 ‘할 수 있다(may)’ 는 준수의 정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표준과 지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 1) ‘해야 한다(shall)’ 는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2) ‘하는 것이 좋다(should)’ 는 선호되는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3) ‘할 수 있다(may)’ 는 가능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라는 용어는 지뢰행동의 규정, 운영 및 조정을 위한 책임을 가진 폭발물피해국가에서 정부기관, 자주 부처연합위원회를 말한다.

참고: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유엔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일부 또는 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할 수 있다(may).

‘고용인(employer)’ 이라는 용어는 지뢰 제거 프로젝트나 과제들의 이행을 담당하는 모든 조직(정부, 비정부 기구, 또는 상업적 단체)을 가리킨다. 고용인은 주요 계약자, 하청업자, 자문위원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may).

‘피고용인(employee)’ 이라는 용어는 고용인을 위해 일하는 남녀를 가리킨다. 피고용인들은 관리, 운영 또는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may).

4.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요소

4.1. 일반 요구사항

국가지뢰행동기구와 고용인(정부, 비정부 기구 및 상업적 단체)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런 관리 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의무 및 책임과, 아래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C155 및 R164(부속서 A 참조)에 제시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의무 및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should).

4.2. 국가의 책임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다음 사항을 위해 작업 환경에서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정, 직업규약, 표준운영절차(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또는 기타 적절한 지침을 반포하거나 승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가급적으로 실현가능한 위험 제거 또는 감소를 목적으로 고용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와 조언을 제공
- 2) 공공기관, 고용인 및 그의 단체와 대표들,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에 의해 국가, 지역 또는 국부적으로 행사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들을 조율
- 3)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촉진
- 4) 경험 및 기술의 진보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률을 수시로 검토

국가지뢰행동기구는 국가 표준과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행 및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국가 표준과 지침이 없는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부속서 A, 참고 3 참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2의 요약은 참고를 위해 부속서 B에 제시되어 있다.

4.3. 고용인의 책임

고용인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안전한 작업장,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고 유지하며, 위험을 제거하거나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안전한 작업 관행 및 절차를 채택
- 2) 적절한 감독 및 훈련(적합한 곳에는 개발 및 재교육 훈련)을 제공
- 3) 직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적절한 개인보호장구와 보호복을 제공
- 4) 사고 발생 시, 직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적절한 건강관리 및 응급 의료지원을 제공
- 5) 국가 관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피고용인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들 임명 및 위원회 구성. 이 점에서 해당 대표자들과 위원회에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
- 6) 표준운영절차에 있어 적절한 경우 안전 정책 및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 정보를 피고용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매체로 모든 피고용인에게 통지
- 7) 수시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용 가능한 표준의 이행을 검증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심사를 실시
- 8) 신고해야 하는 직업관련 사고 및 사건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안전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 9) 사망, 장애 및 부상 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직원에게 적절한 보험 혜택이 존재하도록 보장

지뢰제거단체는 (고용인으로서의 자격으로) 국가 표준과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과 계획을 개발, 시행 및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국가 표준과 지침이 없는 경우, 지뢰제거단체는 적절한 시스템과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부속서 A, 참고 3 참고)를 활용할 수 있다(may).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2의 요약(안전보건경영시스템 18001의 시행에 대한 지침)은 참고를 위해 부속서 B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 고용인은 추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should).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체 규정, 직업규약, 표준운영절차 또는 기타 적절한 조항을 반포, 유지 및 갱신

- 2) 같은 국가 내 다른 피고용인과 협력하여 표준의 일관성을 보장
- 3) 국가지도행동기구 설립 중, 주최국이 국가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직업규약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

4.4 피고용인의 책임

국제노동기구 C155와 R164는 피고용인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피고용인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스스로의 안전, 그리고 직장에서 그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may) 타인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 2) 그들의 품행 및 안전과 관련하여 주어진 지시를 준수하고
- 3) 안전장치 및 개인보호장구를 일관성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작동 불가하게 하지 말며
- 4)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상황을 직속 상관에게 바로 보고한다.

부속서 A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문서에는 본 표준의 본문에서 참고하거나 본 표준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인용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인용문서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본 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인용내용에 기반을 둔 협약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열거한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찾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인용날짜가 없는 경우는 표준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되었음을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유효한 현행 국제표준화기구 및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자격을 갖는다.

- 1)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 2) 국제지뢰행동표준 10.20 산업안전보건 - 지뢰제거현장 안전
- 3) 국제지뢰행동표준 10.30 산업안전보건 - 개인보호장구
- 4) 국제지뢰행동표준 10.40 산업안전보건 - 지뢰제거작업 의료지원
- 5) 국제지뢰행동표준 10.50 산업안전보건 - 폭발물 보관, 운반 및 취급
- 6) 국제지뢰행동표준 10.60 산업안전보건 - 지뢰제거사건 보고 및 조사
- 7) 국제지뢰행동표준 10.70 산업안전보건 - 환경보호
- 8) 국제표준화기구 가이드 51, 안전에 대한 측면 -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
- 9) 국제노동기구 C155, OHSAS (1981)
- 10) 국제노동기구 R164, OHSAS (1981)
- 11) OHSAS 18001:1999 - 설명서
- 12) OHSAS 18002:2000 - OHSAS 18001의 시행을 위한 지침

본 참고문서들의 최신번역 및 최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가 본 표준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표준의 사본을 보관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 참고자료의 최신 번역 및 판본의 등록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가 관리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웹사이트(<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본을 입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 가이드 51은 ‘위험’ 과 ‘안전’ 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개념이 다른 국제표준화기구 문서에서 사용될 때 지켜야 할 지침을 제공한다. 본 표준과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다른 표준 및 지침은 가이드 51에서 제공하는 정의와 절차를 사용한다.

참고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인권과 노동권의 촉진을 추구하는 유엔의 전문 기관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작업조건을 규제하는 기본 표준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국제표준을 제정한다.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을 받으면 국가 법률의 일부가 되는 법적 도구이다. 권고는 회원국들이 준수할 수 있는[may] 지침을 제공한다.) 협약 C155 및 권고 R164는 작업 환경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제안을 말한다. 이 두 문서는 ‘... 경제활동의 전 분야와 근로자의 모든 범주’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활동의 전 분야’라는 용어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작업장’은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가야 하는 모든 장소와 고용주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참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문서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그러한 시스템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한다.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e)가 개발한 OHSAS 18001과 18002는 적절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이 없는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이들은 국가지뢰행동표준의 개발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제공한다.

부속서 B (참고)

OHSAS 18002의 요약

(OHSAS 18001의 이행 지침)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요소

B.1. 일반 요구사항

지뢰행동단체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4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 시스템은 아래에 설명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B.2. 산업안전보건 정책

조직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표준운영절차에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should) 직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should). 주최국의 공식 언어와 직원이 사용하는 공동의 지역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should).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정책은 푸슈투어[Pusutu]와 다리어[Dari] 둘 다 사용하여 준비되는 것이 좋다 [should].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 고문이 사용하는 언어로 문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may], 이 경우 구두로 직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B.3. 계획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정책 및 표준운영절차의 확립 및 유지가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 1) 위험 확인, 위험 사정(査定) 및 위험 통제를 위한 계획. (표준운영절차에는 하청업체 및 작업장 방문자의 활동을 포함하여 작업장 내 모든 지뢰행동 활동에 대한 절차와 작업 지침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또한 질병 통제 및 예방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 2) 법률 및 기타 요구사항 (지뢰제거단체는 부문별 모범 사례의 표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should].)
- 3) 목표. (지뢰제거단체는 사건과 사고의 감소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규율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지뢰제거 작업장에서의 안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일반적으로 합의되는 한편, 지뢰제거단체는 직원이 작업장의 문제를 식별하고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표준운영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 4) 산업안전보건 관리 프로그램. (지뢰행동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사회의 요구사항과

주최국의 요구사항 사이의 균형 및 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 [should].)

B.4. 이행 및 운영

이행 및 운영은 다음을 위한 문서화된 계획 및 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조직의 안전 책임자의 식별 및 세부 책임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구조. (국가 역량 개발 조직 및 역량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책임을 주최국에 조기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 2) 훈련과 인식.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및 자신의 안전과 건강 유지,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지원에 대한 모든 피고용인의 책임에 대한 훈련과 정기적인 재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should]).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식별과 보고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should). 역량 개발 프로젝트에는 안전 책임자 및 팀 리더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과 관련된 직원을 위한 공식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 3) 협의와 소통
- 4) 문서화. (표준운영절차에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이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와 작업 지침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may] 국가지뢰행동기구 및 기타 기관이 지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절차 보고가 포함된다.)
- 5)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문서 통제
- 6) 운영 통제
- 7) 비상상황 준비 및 대응. (지뢰제거단체는 지뢰제거현장에서의 비상상황 대응 계획의 준비와 그들의 정기적 시험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좋다[should]. 여기에는 계획에 식별된 의료 및 사상자 후송 시설의 수용력 및 역량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B.5. 점검 및 시정조치

점검 및 시정조치는 다음에 대한 계획, 절차의 확립 및 유지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산업안전보건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2) 사고, 사건 및 부적합 사항. (지뢰제거단체는 지뢰제거사건, 지뢰제거사고 및 지뢰사건, 지뢰사고를 식별하고 각각 별도로 다루는 문서화된 표준운영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제거사건, 지뢰제거사고의 보고 및 문서화에 대한 표준은 국제지뢰행동포준 10.60에 포함되어 있다.)
- 3) 질병 통제를 포함한 시정 및 예방조치
- 4) 기록 관리
- 5) 심사 및 모니터링

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 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사항
1	2004.1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맷 변경. 2. 글자 편집 소폭 변경 3.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이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어, 정의 및 약어의 변경.
2	2006.8.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머리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소폭 변경 및 추가 2.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용어 포함.
3	2010.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뢰행동기구 및 직원의 정의 갱신. 2. 유엔지뢰행동조직 주소 갱신. 3. 부속서 B 및 해당 부속서의 제3조의 인용표준 삭제. 4. 인용표준 목록 갱신. 5. 부속서 C를 B로 재명명, 국제지뢰행동표준 본문의 인용표준 재명명. 6. 센터 이슈를 포함하기 위한 소폭 변경.
4	2012.8.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개발 영향 검토. 2. 국제지뢰행동기구 06.10과 10.70을 적용범위에 포함. 3. 오타 소폭 개정
5	2013.6.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지뢰행동표준 신규 토지해제 영향 검토. 2. 제목과 표지에 개정기록 번호 및 개정날짜 포함.